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나7642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조경운

피고, 항소인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레

담당변호사 황봉환

변 론 종 결 2021. 11. 10.

판 결 선 고 2021. 12. 22.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가단5240073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C 사이에, 1)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6. 체결된 매매계약을 53,699,456원¹⁾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2)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53,699,4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별지 2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공탁관)에게 그 채권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주문 제1의 다항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8쪽 마지막 행부터 제9쪽 제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2) G 토지 :

배당금지급채권 양도

m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A로 G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21. 8. 12.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에게 각 16,501,04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의

배당금지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피고들은 위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갑 제23호증).

m 그렇다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피고들이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신한미, 판사 조정환, 판사 오승이

별 지 1

부 동 산 목 록

- | | | | |
|------------|---|---------|----|
| 1. 경기도 파주시 |  | 답 4109㎡ | |
| 2. 경기도 파주시 | | 전 853㎡ | 끝. |

별 지 2

채 권 목 록

피고 , 이 소외 대한민국(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공탁
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
원 고양지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의 각 16,501,044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 끝.

1) 피고들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의 인용범위를 초과하여 이 법원 변론종결일 기준
피보전채권을 한도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